

## 계좌간 자금이체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KR선물(주) (이하 “회사”라 한다)의 국내파생상품 및 해외파생상품 거래고객(이하 “회사거래고객”이라 한다)이 회사의 동일고객계좌 상호간에 자금이체거래(이하 “자금이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인확인) 자금이체와 관련하여 본인 확인은 약정된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로 확인하는 데 동의한다.

제3조(자금이체계약의 성립) 자금이체계약은 고객이 이체거래대상계좌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록인감(또는 서명감)을 날인(또는 서명)한 서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자금이체 대상계좌) 자금이체대상계좌는 동일인 명의의 국내파생상품 및 해외파생상품 거래계좌로 계약 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한다.

제5조(자금이체 신청) 자금이체신청은 서면, 유선 또는 PC등을 이용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신청시간은 국내파생상품의 영업일(월~금요일까지) 입출금 종료시간 이전에만 가능하다.

제6조(자금이체 금액) 자금이체 금액은 이체출금대상계좌의 인출가능현금 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환전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계

좌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환전의 시기 및 방법은 회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면책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2. 전산장애, 회선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어 발생한 손해
3. 고객의 부주의로 자금이체계좌의 비밀번호 등 기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어 발생한 손해
4. 기타 회사가 신의성실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손해

제9조(자금이체약정의 해지) 자금이체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금이체약정 계좌의 이관, 폐쇄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0조(전화등의 녹음) 회사거래고객과 회사는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제11조(약관변경 통지) ①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의 내용이 회사거래고객에게 불리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본점, 지점 기타 영업소에 10거래일 동안 게시하며, 청구에 약관을 비치하여 언제든지 본 약관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②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발송한 때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당해 통지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기타사항) 이 약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계에 따른다.

####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